의안번호	제 42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5월 29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 안 번 호	420

제출연월일 : 2020년 5월 29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의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제정의 목적 및 설치 (안 제1조, 제2조)

○ 세입 (안 제3조)

-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

○ 세출 (안 제4조)

-「지방세법」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-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

○ 관리·운용 및 준용 (안 제5조,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과 같다.

1.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
2.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세법」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2.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사업
3. 댐 상류 수계 하천주변 정비사업
4.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또는 지하수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·개선사업 및 조사·연구
5. 광산 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사업 또는 주민생활개선사업

6.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·연구·교육에 필요한 경비

7. 화력발전 지역의 안전·방재 대책 또는 환경개선 사업·조사·연구

8.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

9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관리·운용) ① 특별회계는 충청북도지사가 관리·운용하며, 특별회계의 사무는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.

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징수관 및 재무관 :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

2.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: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

3. 지출원 : 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

제6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,④ 생략

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시·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·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9. 12. 31.>

1. 시·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·도세(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

2. 해당 시·도(특별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방소비세액(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·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)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·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·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, 징수실적(지방소

비세는 제외한다), 해당 시·군의 재정사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관할구역의 시·군에 배분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시·도지사는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27.>

□ 지방세징수법

제17조(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시·군·구 내의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(이하 "시·도세"라 한다)를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. 다만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·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·군·구가 부담하고,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·군·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·도세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

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제24조(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 징수의 위임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·군·구내의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·군·구의 부담으로 하고,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·군·구의 수입으로 한다.

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(시·군·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

시·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·군·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)은 100분의 3으로 한다.
③,④ 생략

□ **지방세법** ('21.1.1. 시행)

제141조(목적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. [전문개정 2019. 12. 31.]

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.
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가.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발전용수"라 한다)
나.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지하수"라 한다)
다.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지하자원"이라 한다)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가.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컨테이너"라 한다)
나.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원자력발전"이라 한다)
다.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"화력발전"이

라 한다)

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: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및 선박(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[전문개정 2019. 12. 31.]

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

가. 발전용수: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(양수발전은 제외한다)을 하는 자

나. 지하수: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(採水)하는 자

다. 지하자원: 지하자원을 채광(採鑛)하는 자
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

가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·출항시키는 자

나. 원자력발전: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

다. 화력발전: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

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: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

[전문개정 2019. 12. 31.]

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.
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

가. 발전용수: 발전소의 소재지

나. 지하수: 채수공(採水孔)의 소재지

다. 지하자원: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. 다만,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.
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
가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
나. 원자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
다. 화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
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
가. 건축물: 건축물의 소재지
나. 선박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. 다만,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
[전문개정 2019. 12. 31.]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29., 2014. 12. 31., 2019. 12. 31.>
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
2. 지하수
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
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
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
4. 삭제 <2019. 12. 31.>
5. 삭제 <2019. 12. 31.>
6. 삭제 <2019. 12. 31.>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9. 12. 31.>
1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
2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
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 3원

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 · 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, 환경개선사업·조사·연구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4조(세출)

1. 「지방세법」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2.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사업
3. 댐 상류 수계 하천주변 정비사업
4.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또는 지하수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·개선사업 및 조사·연구
5. 광산 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사업 또는 주민생활개선사업
6.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·연구·교육에 필요한 경비
7. 화력발전 지역의 안전·방재 대책 또는 환경개선 사업·조사·연구
8.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
9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3년간(17~19년도) 징수액을 근거로 증감율 산출 (단위: 백만원)

구분	계	발전용수	지하수	지하자원	화력발전	증감율(%)
2017년도	2,240	1,306	312	580	42	2.3
2018년도	2,684	1,689	313	633	49	
2019년도	2,293	1,322	299	622	50	

- 2020년도(예상): 2,729,000천원

나. 추계 결과: 9,213,600천원

- 기 준: 징수액 증감율(2.3%)을 적용하여 산출
- 산출기초: 2,729,000천원 × 102.3%(증감율) × 66%(징수교부금 및 시군 조정교부금 제외)
  ≒ 1,842,720천원
- 적 용: 1,842,720천원 ×5개년도 = 9,213,6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: 도비 100%

※ 현행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신설 특별회계로 운용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9,213,600
도 비	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9,213,600
세 출	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9,213,600
주민생활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사업·조사·연구	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9,213,600
재원 조달	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9,213,6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1,842,720	9,213,6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	
구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6. 작성자 :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